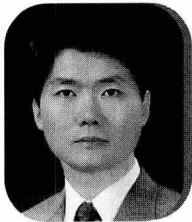


맹장염 수술로

기말고사를 결시한 학생은

LAW Common Sense Information



글 _ 박종복 변호사

맹장염 수술로 학교 기말고사를 결시한 학생은, 불가항력의 사유로 결시한 것으로 보아 중간고사 성적의 100%를 인정점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.

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이 최근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갑자기 복통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맹장염 수술을 받느라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하였다. 학교측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처리 및 중간고사 성적의 80%를 인정점으로 부여한다는 데 대학입시에서 내신이 중시되는 현재의 입시제도하에서 너무 억울하다. 100% 인정점을 받을 수는 없는가?



초·중등교육법 제25조에 근거한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귀하의 아들이 재학중인 경기도 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의하면 결시학생이 “천재지변, 법정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”로 결시한 경우에는 출석처리 및 결시전에 시행한 고사성적의 100%를 인정점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만약 “질병”으로 결시한 경우에는 결석처리 및 80% 인정점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문제는 맹장염 수술로 인한 결시 및 결석이 “불가항력의 사유”이나 아니면 “질병”으로 인한 결시 및 결석이나에 대한 판단문제이다.

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“불가항력의 사유”를 천재지변 및 법정전염병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“질병”의 의미를 불가항력 여부를 도외시한채 모든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맹장염(급성충수염)으로 결시하고 결석한 학생에게 결석처분 및 80% 인정점을 부여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.

따라서 귀하의 아들이 재학중인 학교의 학교교장을 상대로 성적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.